테라비아타 인 삼송(단지형연립) 입주자 모집공고

TERRA BEATA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테라비아타 인 삼송 홍보관 및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terrabeata.co.kr)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terrabeata.c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별도 공지)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운영 중인 테라비아타 인 삼송 인터넷홈페이지(http://www.terrabeata.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사전 고지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삼송지구 B-5블럭)인 고양시 공공택지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공동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단지형 연립주택)으로서「주택법」제57조 제2항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대상이 아니며, 주택청약지역 및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주택법」제64조 제1항 2호「주택법시행령」제 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의 전매는 금지됩니다.(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 행위 제한은 3년으로 하며,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년 5월 21일이며(청약자격조건의 나이 판단기준일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기 당첨사실, 청약통장의 가입여부, 주택소유, 기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음)

■ 본 주택은『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대송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가 2019.06.14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http://www.terrabeata.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홍보관은 사전예약제로 관람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약일, 당첨자 발표일, 정당 계약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 대표번호로 관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동일 "군"의 동별, 호별, 주택형 구분 없이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며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중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제59조 규정만을 적용 받으므로 입주자저축요건, 주택청약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군"별 1건씩(총 3건까지 청약 가능)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군에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군별 중복청약 및 당첨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를 수분양자가 신고관청(고양시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당 공동주택의 건축 관련 도면은 분양홍보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람 및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세대 기준 전용 84B, 84D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0.4.17.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고양시청 주택과 - 24603호(2020.05.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삼송지구 B-5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단지형연립) 지하 1층, 지상 4층 6개동 총 80세대

▣ 대지면적 : 11,038.70㎡

▣ 공급대상

(단위 : 면적-㎡, 세대)

구분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층수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일반공급	해당 동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1군	84.9647A	4층	84A	84.9647	20.5086	105.4733	67.7529	173.2263	125.2339	19	101동 403~407호, 102동 401~407호 103동 401, 403호, 104동 401, 403호 105동 401~407호, 106동 401~407호	2020년 10월
	84.9647B	3층	84B	84.9647	20.5086	105.4733	67.7529	173.2263	125.2339	19	101동 303~307호, 102동 301~307호 103동 301, 303호, 104동 301, 303호 105동 301~307호, 106동 301~307호	
2군	84.6287C	1층	84C	84.6287	21.2668	105.8955	67.4850	173.3805	124.7387	19	101동 104, 105, 108호 102동 101, 104, 105, 108호 103동 101, 104호, 104동 101, 104호 105동 101, 104, 105, 108호 106동 101, 104, 105, 108호	
	84.7357D	1층	84D	84.7357	21.1264	105.8621	67.5703	173.4324	124.8964	19	101동 103, 106, 107호 102동 102, 103, 106, 107호 103동 102, 103호, 104동 102, 103호 105동 102, 103, 106, 107호 106동 102, 103, 106, 107호	
3군	84.9647A	4층	84A	84.9647	20.5086	105.4733	67.7529	173.2263	125.2339	1	101동 401호	
	84.9647B	3층	84B	84.9647	20.5086	105.4733	67.7529	173.2263	125.2339	1	101동 301호	
	84.6287C	1층	84C	84.6287	21.2668	105.8955	67.4850	173.3805	124.7387	1	101동 101호	
	84.7357D	1층	84D	84.7357	21.1264	105.8621	67.5703	173.4324	124.8964	1	101동 102호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별(라인별)	층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60,000,000원(정액제)		잔금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계약금 (2020.06.08)	2차 계약금 (2020.07.10)	입주 지정일
84A	19	101동 403, 405, 407호	4	3	217,907,000	528,593,000	746,500,000	10,000,000	50,000,000	686,500,000
		102동 401, 403, 405, 407호 103동 401, 403호 106동 401, 403, 405호	4	9	217,907,000	518,593,000	736,500,000	10,000,000	50,000,000	676,500,000
		105동 403호, 106동 407호	4	2	217,907,000	508,593,000	726,500,000	10,000,000	50,000,000	666,500,000
		104동 401, 403호 105동 401, 405, 407호	4	5	217,907,000	498,593,000	716,500,000	10,000,000	50,000,000	656,500,000
84B	19	101동 303, 305, 307호	3	3	217,907,000	478,593,000	696,500,000	10,000,000	50,000,000	636,500,000
		102동 301, 303, 305, 307호, 103동 301, 303호, 106동 301, 303, 305호	3	9	217,907,000	467,093,000	685,000,000	10,000,000	50,000,000	625,000,000
		105동 301, 303, 305, 307호 106동 307호	3	5	217,907,000	447,593,000	665,500,000	10,000,000	50,000,000	605,500,000
		104동 301, 303호	3	2	217,907,000	437,593,000	655,500,000	10,000,000	50,000,000	595,500,000
84C	19	101동 104, 105, 108호	1	3	217,045,000	465,455,000	682,500,000	10,000,000	50,000,000	622,500,000
		102동 101, 104, 105, 108호 103동 101, 104호 106동 101, 104, 105호	1	9	217,045,000	455,455,000	672,500,000	10,000,000	50,000,000	612,500,000
		105동 104, 105호 106동 108호	1	3	217,045,000	439,455,000	656,500,000	10,000,000	50,000,000	596,500,000
		105동 101호, 108호	1	2	217,045,000	434,455,000	651,500,000	10,000,000	50,000,000	591,500,000
		104동 101, 104호	1	2	217,045,000	424,455,000	641,500,000	10,000,000	50,000,000	581,500,000
84D	19	101동 103, 106, 107호	1	3	217,320,000	465,180,000	682,500,000	10,000,000	50,000,000	622,500,000
		102동 102, 103, 106, 107호 103동 102, 103호 106동 102, 103, 106호	1	9	217,320,000	455,180,000	672,500,000	10,000,000	50,000,000	612,500,000
		105동 103호, 106동 107호	1	2	217,320,000	439,180,000	656,500,000	10,000,000	50,000,000	596,500,000
		105동 102, 106, 107호	1	3	217,320,000	434,180,000	651,500,000	10,000,000	50,000,000	591,500,000
		104동 102, 103호	1	2	217,320,000	424,180,000	641,500,000	10,000,000	50,000,000	581,500,000
84A	1	101동 401호	4	1	217,907,000	568,593,000	786,500,000	10,000,000	50,000,000	726,500,000
84B	1	101동 301호	3	1	217,907,000	568,593,000	786,500,000	10,000,000	50,000,000	726,500,000
84C	1	101동 101호	1	1	217,045,000	515,455,000	732,500,000	10,000,000	50,000,000	672,500,000
84D	1	101동 102호	1	1	217,320,000	555,180,000	772,500,000	10,000,000	50,000,000	712,500,000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공통사항
- 2009. 4. 1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 제2항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대상이 아니며, 주택형별 공급대금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시행위탁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공동주택의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본 분양주택에 대한 대지를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변동은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으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비용이 포함 되어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군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3군 각타입별 4세대는 목업(mockup) 및 샘플하우스(sample house)로 사용될 예정으로, 외부인 출입 및 관람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인테리어 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입주시기가 다른 세대와 달리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청약일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0년 05월 21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 거주하고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국적 동포) 및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금은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군"별 1건씩(총 3건까지 청약 가능)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군에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군별 중복청약 및 당첨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며, 청약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 청약일정

구분	내 용	비 고
청약일정	- **2020년 6월 2일(화)**	- 인터넷 신청 : 테라비아타 인 삼송 인터넷홈페이지(http://www.terrabeata.co.kr)를 통한 청약 - 접수시간 : 08:00 ~ 17:30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당첨자 및 동·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음.	

▣ 청약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이용안내	- 청약신청 홈페이지 : 테라비아타 인 삼송(http://www.terrabeata.co.kr)을 통한 청약 - 청약신청 홈페이지 접속 → 청약신청 메뉴 선택 → 청약대상확인 → 이용안내 동의 → 휴대전화 본인인증 → 군 선택 및 개인정보 입력 → 청약접수완료 ※ 별도의 청약신청금 없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청약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양홍보관 內 청약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분양홍보관 또는 테라비아타 인 삼송(http://www.terrabeata.c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방법은 1군, 2군, 3군으로만 청약가능 (타입별, 층별 청약불가)

※ 3군 각타입별 4세대는 목업(mockup) 및 샘플하우스(sample house)로 사용될 예정으로, 외부인 출입 및 관람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인테리어 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입주시기가 다른 세대와 달리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청약마감 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 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진행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진행 중이라도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 과밀 또는 당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의 사정으로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구 분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 청약홈 전산(컴퓨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및 동·호수 무작위로 결정함 ※ 당첨자 확인은 테라비아타 인 삼송 홈페이지 (http://www.terrabeata.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동·호수 결정방법	- 신청한 주택의 타입별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전산(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 및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선착순 일반 공급할 예정입니다.

3.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구 분	일 정	장 소
당첨자 발표	- 2020년 6월 4일(목)	- 테라비아타 인 삼송 분양홍보관 - 테라비아타 인 삼송 홈페이지 (http://www.terrabeata.co.kr)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함.(분양홍보관 내 현금수납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4. 계약 체결

▣ 계약절차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20.06.08.(월) ~ 2020.06.09.(화) [2일간 / 시간 : 10:00~16:00]
- 계약장소 : 테라비아타 인 삼송 홍보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3-725468	교보자산신탁(주)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계약 시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 1통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1통) 3. 대표이사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4.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제출 1.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 2.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계약위임용) 3.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2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 조건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한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3항부터 6항에 준함.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3항 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한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및 맘스 스테이션 1개소) 등

▣ 공동주택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제 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됨.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주택형	확장위치	시스템에어컨 위치	비 고
84A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세탁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 전세대 발코니 84(A~D)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세탁실은 확장형으로 분양되며,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 (외부 발코니 창호제공)
84B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세탁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84C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세탁실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4D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세탁실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금액은 없으며, 실별, 위치별 선택할 수 없음.(발코니확장은 전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직접 외기와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의 경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 창호규격 및 사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우천 등의 영향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 4.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주택형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 및 청약시 주택형(㎡)	84.9647A	84.9647B	84.6287C	84.7357D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홍보관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단지 인근에 분묘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여 분묘 조망,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와 무관함.
- 본 단지는 고양삼송지구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단지 공사, 입주 후 주변 시설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 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은 산(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묘가 존재하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및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인 '테라비아타 인 삼송'은 토지이용계획, 건축관계 법규상 4층 이하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부지이며, 이에 따라서 추후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으로 등기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대출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은 테라스 등이 제공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동 공동주택 단지 설계상 제공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불가피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해야 함.(4층 상부 다락 전면부 옥외 테라스 공간 포함). 다만, 테라스 공간 등은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2020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분양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소음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 분양홍보관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잔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계약자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관련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타 지역의 분양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시행위탁자가 개별 통보함.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일부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품목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및 기본 제공품목 등은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미분양 세대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 유동화, 임대, 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계약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동·호수 당첨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분양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지내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설계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공용부분 관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사업승인 조건 등에 의거하여 단지 경계에는 담장이 미시공되나 부득이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주변도로 및 경관을 고려하여 1.2m 이하로 설치될 수 있음. 또한,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향후 소음영향평가 등에 의해 방음벽 및 수목림이 설치될 수 있음.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 마감은 점토벽돌, 석재 및 외장 패널, 도장재 혼합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마감재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 등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각 세대별 현관 출입은 각 동별로 위치 및 세대별 출입 여건이 상이 하오니, 계약 전 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으로서 전용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경사로 등),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공동시설 및 자전거 보관소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변 단지 신축으로 건축사항 및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층·동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 소음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일부 DA는 건물 또는 조경 하부에 매립되어 소음 및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에 인접 동은 각 시설물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수거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과 냄새유입 등의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입면, 벽체마감, 외부색채, 간판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상세한 사항은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하며, 커뮤니티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설치되어 있는 인접세대 저층부는 냄새,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와 사다리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음.[당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엘리베이터는 15인승으로 이삿짐 운반시 일부 대형 시설물은 운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사항은 분양홍보관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5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추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또한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상호정산 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단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 동·호수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임.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관리사무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입주 시 세대 앞정원은 공용공간이나, 1층세대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층세대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전세대가 동의하며, 경계부에는 울타리 및 세대별 칸막이가 제공됨. 입주 후 세대 앞 정원의 조성 및 변경 등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와 무관함.
- 106동 계단실 상부에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해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되며, 축열된 에너지는 지하주차장 조명용으로 사용됨.

■ 단위세대 부분 관련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단위세대 CG 및 각종 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홍보관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 아이소메트릭 및 일부 비건립형 모형은 '발코니 확장과 플러스 옵션(유상 옵션) 전체 적용'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플러스 옵션' 선택 유형에 따라 실 시공 현황은 타입별로 상이함.
- 본 사업은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차이가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창, 자동 제어 시스템,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음.
- 테라스 및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 분전반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역난방 고시지역이며 향후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임.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자사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TV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관련 유의사항
- 분양홍보관에 연출되어 있는 테라스에 표현된 목재 데크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출한 것으로 실 시공 시에는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 테라스는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임에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음으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테라스(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제공품목 : 테라스, 옥외공간(최상층 복층 외부 공간), 난간대
  - 미제공품목 : 바닥 목재스타일 데크, 어닝, 각종 놀이기구, 운동용품, 테라스 물품 등 각종 디스플레이 소품 등
- 최상층세대 다락은 바닥난방이 되지 않으며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3,4층 테라스는 자기질 우드타일 마감임.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에는 우·오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진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에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의 난간이 설치됨.
-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벽체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 간 경계벽, 난간대는 본 공사 시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설계상 발생하는 공용 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는 시행 및 시공사가 준공 시에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건축기본마감(방수, 단열)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설계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 후 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테라스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설계상 다른 세대 상부에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가설시설물(예시: 조경, 파고라, 놀이기구 등) 설치 시 하중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 시 전문가에 의한 설치/시공을 권장하며, 전문가를 통한 설치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접세대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시기 바람.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아래의 권장사항을 위반한 설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시공회사는 무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테라스 구간에는 활하중 3kN/㎡이 적용됨. 준공 이후 입주민에 의한 테라스상부 추가 마감 공사 시, 이는 설계 시 고려하지 않은 하중이므로 아래 마감에 따른 추가하중에 대한 예시를 참조하여 상기 활하중 이상의 증가를 금하여 주시기 바람.
> (단위면적당 하중은 비중 X 마감두께임. 대리석비중=2700kgf/㎥, 타일+몰탈=2000kgf/㎥, 흙=2000kgf/㎥)

-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4층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시설로 본 단지는 설치대상이 아님.(「건축법시행령」제46조 제4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고기밀창호	적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는 KS F2292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 전동기-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단위세대, 공용부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실별 온도 조절장치	적용	• 세대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내 수전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회사명	㈜바우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300,0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0-101-0003300 호	4,800,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신탁사)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시공회사	사업주체 겸 시행위탁자
상 호	교보자산신탁(주)	주식회사 대송	주식회사 대송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46(용흥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46(용흥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74811-0001183	174811-0001183

▣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 유의 사항
- 테라비아타 인 삼송 신축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탁자 ㈜대송(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같음), 신탁사 교보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주)대송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주)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과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대송이 책임을 부담함.
-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송과 수탁자(매도인)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공급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송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매도인)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송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됨.
- 분양대금은 "신탁계약"에 의거 교보자산신탁(주) 명의 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교보자산신탁(주) 명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양대금 은 본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현재 사업부지가 조성중인 토지(미준공택지)로서, 신탁계약기간 중 용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용지조성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대송에게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교보자산신탁(주)와 ㈜대송이 기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주)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함에 계약자는 동의한다. 단, 용지 조성 완료 전(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에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교보자산신탁(주) 명의로 신탁등기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terrabeata.co.kr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4-2 현프라자 3층
▣ 분양문의 : 02)371-334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테라스하우스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나다

It's T style

테라비아타 in 삼송

전용면적 84㎡ A/B/C/D 전 세대 테라스

문의 02) 371-3345

- 분양홍보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4-2 현프라자 3층
- 현장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삼송지구 B-5블럭

www.terrabeata.co.kr

시행 교보자산신탁(주) 시공/위탁 주식회사 대송